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제한〉

■ 강병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1758호)

2021.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철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2.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5
※ 참고자료	
1.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9
2.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규정	11

I. 제안경위

1. 발의자 : 강병원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1. 7. 26.
3. 회부일 : 2021. 7.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가해자 신상정보는 공개 예외규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범죄수사규칙」으로 일부만 공개되고 있음.

이에 비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에게만 범죄피해자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개별 사안에만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

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이는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제2차 피해를 유발시키며 이미 광범위하게 공개·유통된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큼.

실제로 ‘경북 구미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이 ‘제보를 받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노출되었음. 이로 인해 인터넷 언론 및 SNS상에서 재생산되어 피해 아동의 얼굴과 실명을 거론해 ‘너무 예쁜데 왜 이런 일이 ...’ 등 인권 침해 기사와 사건의 추측성 기사들이 난무하였음. 또한 ‘반포한강공원 실종’사건의 경우 실종자의 실명이 거론됨과 동시에 친구 A씨의 ‘타살 음모론’이 제기되었음. 이에 A씨와 가족의 사진, 신상정보까지 무분별하게 유포되었고 이는 생활 제기가 어려울 만큼 직장과 학교까지 피해를 주어 A씨 측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였음.

따라서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 되어야 함. 본 법은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음.

이를 위해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
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및 제39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에 맞추어 현행법의 목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u>구조(救助)함으로써</u>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구조(救助)하는 등</u> ----- ----- -----.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생략) ②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u><신설></u> 4. (생략) ③·④ (생략)	제15조(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생략) <u><신설></u>	제3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누구든지 <u>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주민등록번호,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영상 등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u>

2.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의 타당성

□ 개정안은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범죄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정보가 유출됨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및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범죄피해자가 보복범죄의 위험에 처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음.

○ 현행 법체계 하에서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반적 규정은 「형사소송법」에 두고, 특정범죄에 대해 적용되는 특별한 보호 내용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 「형사소송법」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의 열람·복사를 제한하거나 비식별화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참고 1]
- 성폭력, 존속살인, 인신매매, 강도,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해당 범죄의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 [참고 2]
- 개정안은 위의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일반적·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해당 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개인의 인적사항이 일단 유출되면 유통·확산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첫째, 현행법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에 따른 보호위원회가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방안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하여 빠짐없이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처리 대상 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범죄피해자 지원정책을 심의하는 기관인 보호위원회는 차관급 공무원과 비상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서 연 1회 회의를 개최하는데 불과하여 심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임.

또한, 보호위원회는 특정한 범죄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 전에 또는 심의 결과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이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는바, 이는 사전에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당초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둘째, 개정안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보호위원회가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안 제39조제2항에서는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보호위원회가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상이 범죄 피해자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자로 한정되지 않는다면 그 외에 어떤 사람이 포함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동 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정책을 심의하는 것이라는 점,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수사기관에서 보유·관리하므로 법무부는 이에 대한 접근권이 없다는 점, 중앙부처가 범죄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호위원회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1

[참고 1] 「형사소송법」 상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

「형사소송법」

제35조(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 ①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의2(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①누구든지 권리구제·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 또는 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개선 및 갱생을 방해하거나 사건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5. 제59조의2제2항제3호 또는 제6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다만, 소송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등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소송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에게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266조의16(열람·등사된 서류등의 남용금지)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피고인 또는 변호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검사가 열람 또는 등사하도록 한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면 및 서류등의 사본을 당해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4조의4(피해자 등의 공판기록 열람·등사) ①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변호사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소송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한 자는 열람 또는 등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항을 사용함에 있어서 부당히 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거나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2] 범죄피해자 등의 인적사항 보호에 관한 특별법 규정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서등에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범죄신고자등으로 하여금 조서등에 서명은 가명(假名)으로, 간인(間印) 및 날인(捺印)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명으로 된 서명은 본명(本名)의 서명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 범죄신고자등은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이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범죄신고자등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 또는 범죄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벌칙) ① 제8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출판물 게재 등으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특정강력범죄 중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審理) 중에 있는 사건의 피해자나 특정강력범죄로 수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성명, 나이, 주소, 직업, 용모 등에 의하여 그가 피해자이거나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또는 그 밖의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 또는 유선방송하지 못한다. 다만, 피해자, 신고

하거나 고발한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와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비밀누설 금지)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또는 그 아동·청소년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45조 및 제46조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피해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실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이하 “방송”이라 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신고의무 등)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8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